의	안 번	호	제	ই
의		결	2024.	
연	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국 가 연 구 개 발 혁 신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상임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연구개발기관이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R&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

또한, 국가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, 평가위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제외 대상범위를 축소하고자 함

또한,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을 완화하고, 연구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한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 시 국가R&D 과제선정 불이익 (안 제12조 제5항제3호 신설)

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제재부가금, 연구개발기관이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 R&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
나.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·장비비 특례의 근거 명확화 (안 제2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)

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명확화

- 다.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(안 제27조제3항제4호)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제외 대상을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에서 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변경하고, 각 목 조항을 삭제함
- 라.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(안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) 기업의 기술료 및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, 납부기준인 납부요율을 현행대비 1/2 수준으로 하향 조정
- 마.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강화 (안 제41조제2항제1호)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.)의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술료의 연구자 보상 사용비율 기준을 상향(현 50%→60%이상) 조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 대통령령 제 호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
- 2.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의 특례

제27조제3항제4호에 "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. 이 경우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, 학부(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한정한다),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제외할 수 있다."를 "같은 부서에 소속된 사람. 이 경우 '같은 부서'란 학과,학부(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,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수행하는 최하위단위 부서를 의미한다."로 한다.

제27조제2항제4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전부 삭제한다.

제38조제3항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50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 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,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1,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50를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보며,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	제12조(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
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	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	⑤
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	
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	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	
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	
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
	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
	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
	른 제재부가금 또는 법 제32
	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
	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
	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	제20조(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	4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	

라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 용 기준
- 2.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에 관 한 사용 기준
- 3. (생략)

제2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**구성)** ① ~ ② (생 략)

-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.
- 1. ~ 3 (생 략)
- 4.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 4.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 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 된 사람. 이 경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학과, 학부(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,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 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.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|

- 1.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
- 2.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의 특 례
- 3.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**구성**) ① ~ ② (현행과 같 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- 1. ~ 3 (현행과 같음)
- 구책임자와 같은 부서에 소속 된 사람. 이 경우 '같은 부서' 란 학과, 학부(해당 학부에 학 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,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 는 최하위단위 부서를 의미한 다.

< 삭 제 >

호의 학교 나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< 삭 제 >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 구기관 다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관 라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 행령 |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 기관

< 삭 제 >

< 삭 제 >

제38소(기술료의 납부) ③ 법 제	제38조(기술료의 납부) ③
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	
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	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	
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	
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	
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	
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	
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	
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	
해야 한다.	<u>.</u>
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	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

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 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 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 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 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익의 납부) ① (생 략)

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 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 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 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

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.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 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상한으로 한다.
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.000분의 50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 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을 상한으로 한다.
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: 기술료 징수액에 1,000분 의 100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정 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 제39조(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 **익의 납부)** ① (현행과 같음)

대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.

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 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중앙행정기관의 장과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100분의 5를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연구개 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하으로 한다.
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

-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_	_	_	_		_	_	_	_	_					_	_	_	_	_	_	_	_	_	_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

- 1.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 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(중앙행정기관의 장과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1,000분의 25를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2.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연구개 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50를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- 3.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: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,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. 다만, 정부지

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 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제41조(기술료의 사용) ① (생 럌)

-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(기술료 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. 이 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"정부 지분기술료"라 한다)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 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
- 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
- 2. ~ 4. (생 략)

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
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제41조(기술료의 사용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
- 1.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1.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에 대한 보상금: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
 - 2. ~ 4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									
연	락	처	(044) 202 - 6925						